

조례적용임대사업관련보고

2003. 02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보 고 순 서

I. 추진경위 ----- 1

II. 임대현황 ----- 1

III. 운영실태 및 문제점 ----- 2

IV. 그동안 조치 (개선) 사항 -- 3

V. 개선대책(안) ----- 4

조례적용임대사업 관련보고

I. 추진경위

- 1995. 4. 25 조례 제3181호 "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 판매대,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"제정
- 1995. 11월~2000. 11월 : 단계별 개통에 따른 공모실시 (총 11회)
- 2001. 10월 : 계약종료 31개소 임차인 재선정
- 2002. 05월 : 계약종료 25개소 임차인 재선정
- 2003. 02월 현재 총 386개소 임대운영

II. 임대현황

○ 임대기준

- 대 상 자 : 장애인, 65세이상노인, 모자가정여성, 독립유공자 유가족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임대방법 : 대상자중 우선순위별 신청접수 후 공모추첨에 의한 당첨자 직영 (대리인, 종업원 가능)

○ 운영현황

구 분	계	장애인	65세이상노인	모자가정	독립유공자
계	386	269	98	18	1
신 문	127	86	37	4	0
자 판 기	174	134	28	11	1
복 권	38	16	20	2	0
매 점	47	33	13	1	0

※ 임차인 직접 운영자 : 신문 9, 매점·복권 5, 음료수 15

Ⅲ. 운영실태 및 문제점

□ 운영실태

- 신문판매대 : 지역별 신문 유통업체에서 신문 공급
→ 단순판매상 역할
- 음료수자판기 : 임차인 고가 기기설치 부담, 고장조치능력 미숙으로 민원유발 → 전문업체 의존
- 매점·복권 : 판매물품 단순, 외부상가 대비 상품가격 차등, 전자복권 등으로 수익저조

□ 운영관리

- 종업원 (대리인) 변경시마다 사전승인
- 매년 변경계약 체결시 임차인 직접 운영여부 확인
- 운영실태 지도점검
 - 일상점검(역), 분기점검(관리소), 특별 및 수시점검(본사)
- 운영허가증 (계약자 사진) 및 전대·전매금지 스티카 부착
 - 전대·위탁운영 적발로 계약해지 조치 (6건)

【 참고사항 】

- 계약해지 ('95 ~ '03 현재)

계	영업부진	전대·위탁운영	임차인사망	수급해제우려	기타
114건	74	6	25	5	4

- KBS언론 보도사항 ('02. 12. 12)
 - 유통업자가 명의 임의 도용 신청 및 대리운영 관계보도
 - 서울시 감사관실 조사중 ('03. 01. 06)
 - : 대상자증명서 (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) 진위여부, 불법전대, 위탁운영 여부

□ 문제점

-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능자에게 우선순위 부여
 - 종업원 고용이 필수적으로 실질소득 저조
 - 유통업체가 신청시부터 운영까지 개입 할 수 있는 여건 (무더기 신청, 대리운영 등)
- 종업원을 가장한 전대·전매 행위 증거 적발 곤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초기 투입자본 부담
 - 자판기 구입, 물품구입 비용 부담으로 유통업체 의존
- 신문, 물품, 재료의 자체공급 곤란으로 유통업체 등 개입
- 단일품목 취급으로 수익성 저하로 운영포기

IV. 그 동안 개선 (조치)사항

- 신청 및 계약체결시 전대·전매 방지 사전 공지
 - 무더기 신청 방지를 위한 1인 1매 개별접수
 - 전대·전매, 위탁운영시 계약해지사항 개인별 안내
 - 계약체결 : 대리가능 (위임장 첨부) ⇒ 직접체결
- 신청접수전 영업성 판단토록 현장확인 주지
- 계약후 서울시(장애인복지과)로 계약 사실 통보
- 조례적용임대시설물 신청 간소화 (행정규제완화)
 - 추첨보증금 제도폐지 : 연간임대료의 5%를 신청시 납부
 - 서류간소화 : 신청시 (주민등록등본), 계약시 (호적등본)
- 임대료 납부 : 연간 선납 ⇒ 분기납 (향후 계획)

V. 개선대책(안)

□ 조례 적용 강화 및 절차개선

○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

- 직접 운영가능자 또는 장애인 2급이상 일때 대리인 (조례),
종업원 (규정) ⇒ 직접 운영가능자 또는 대리인(민법 제777조)

○ 공모절차 개선

- 우선사업대상자 개별신청 ⇒ 우선사업대상자중 행정기관
추천자로 공모추첨

○ 효과 : 업체, 협회 등 개입 사전차단 및 실질적 수혜자 선정

【 향후 공모추진계획 】

계약기간	계	신문	음료수	복권	매점	비고 (공모시기)
계	420	136	194	40	50	
'00.02.29~'03.02.28	11	5	6	0	0	'03년 5월
'00.08.01~'03.07.31	40	15	22	0	0	
'00.08.07~'03.08.06	10	4	6	0	0	
'00.08.15~'03.08.14	171	49	73	21	28	
'00.11.27~'03.11.26	82	23	37	10	12	'03년 10월
'00.12.15~'03.12.14	54	24	27	0	0	
'01.03.09~'04.03.08	8	3	5	0	0	
'02.01.01~'04.12.31	31	5	12	3	7	'04년
'02.07.02~'05.07.01	28	8	6	6	3	'05년

※ '03.5월 : 미임대 14건, 음료수자판기 신규 20개소 포함

※ 공모시기 조정 : 단계별 개통으로 계약기간 다양

⇒ 계약기간 연장조정 (4단계 통합)